

제422회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2월11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9)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8)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5)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6)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6)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9)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7)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9)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3)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5)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6)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0)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7)
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0)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9)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1)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1)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7)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1)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7)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4)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3)

-
-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9)
 -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7)
 -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7)
 -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0)
 -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9)
 -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9)
 -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0)
 -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5)
 -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5)
 -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2)
 -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4)
 -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8)
 -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5)
 -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3)
 -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3)
 -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9)
 -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4)
 -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3)
 -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1)
 -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9)
 -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8)
 -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0)
 -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9)
 -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5)
 -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5)
 -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6)
 -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0)
 -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5)
 - 9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4)
 - 9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8)
 - 9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 9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3)
 - 10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8)
 - 1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7)
 - 1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9)
 - 1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2)
 -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1)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9)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4)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

상정된 안건

1. 범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10
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9) 10
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8) 10
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5) 10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10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10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10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10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1) 10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0) 10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0) 10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3) 11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6) 11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6) 11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8) 11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9) 11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3) 11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3) 11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3) 11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9) 11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1) 11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11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11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11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11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11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11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11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11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11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11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11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11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11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11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11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11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11
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11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11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11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11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11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5)	11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6)	11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6)	11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9)	11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7)	11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9)	11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3)	11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5)	12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6)	12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0)	12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7)	12
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0)	12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9)	12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1)	12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1)	12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7)	12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1)	12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7)	12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4)	12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12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12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12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3)	12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9)	12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7)	12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7)	12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0)	12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9)	12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9)	12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0)	12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12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5)	12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5)	12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2)	12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4)	12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8)	12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5)	12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3)	12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3)	12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9)	12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4)	12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3)	12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1)	12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9)	12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8)	12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0)	12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9)	13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5)	13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5)	13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6)	1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0)	13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5)	13
9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4)	13
9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8)	13
9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13
9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3)	13
10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8)	13
1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7)	13
1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9)	13
1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2)	13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1)	13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9)	13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4)	13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13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13

(11시00분 개의)

○소위원장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정기회 우리 소위원회에서 또는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결하지 못했던 사항들 그리고 일부는 본회의에 직회부돼서 올라간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법률안들을 정리하고 또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발언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배석하신 분들은 위원장 허가를 받고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발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야당 간사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정태호 위원 민주당 간사 정태호입니다.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대표연설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마치 법안 통과가 민주당 때문에 기재위에서 안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민주당을 비난을 하셨어요. 그걸 좀 정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와 관련한 세액공제 관련 예산 또 하나는 미래형 선박이 국가전략기술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와 관련해서 국가전략기술…… 우리 당의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이 10%의 세액공제안을 제시를 했었고 정부가 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반대하셔 가지고 5% 상향하는 걸로 그때 잠정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형 선박과 관련해서는 국가전략기술의 ‘미래형 운반 및 이동수단’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포함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 여야 간의 잠정 합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전문위원회실에서 대체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대안 법안을 만들었고 기재위 상임위 전체회의가 있는 날 그걸 통과시키기로 간사 간의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당일 날 국민의힘 쪽에서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당일 날 처리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이 반대하거나 발목 잡고 있어 가지고 처리가 안 된 것처럼 당대표 연설 과정에서 민주당 책임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비난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그 지점을 명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요구합니다.

○오기형 위원 저는 따로 하나……

○소위원장 박수영 말씀하시지요.

○오기형 위원 조세소위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한 말씀, 의사진행발언 겸 정부 측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어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니까 약 29.4조 예상을 했다가 30.8조로, 29.6조인가요? 그래서 한 일 점 몇 조 정도가 더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세수 감소, 세수결손에 대해서는 되게 심각한 일이고 이런 지점에 대해서 어제

공개적으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종래에 한번 했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 참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니까 2021년도 세수가 344.1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세수가 336.5조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2021년 이후에 2022년 초과 세수 발생했고 23년 세수결손 56.4조 그다음에 작년에 세수결손 30.8조 이렇게 세수결손이 나오면서 세수의 절대치가 감소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경상성장률 자체가 한 4%, 5%대로 계속 21년, 22년, 23년, 24년까지 꾸준히 성장해 왔는데 세수의 절대치가 감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세정책을 담당하시는 정부 당국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종래에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비판을 했지만 무리한 감세정책으로 실질적으로 나라의 곳간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 조세소위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이 지점들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 어느 정도의 조세개혁의 방향이 적절하냐 할 때도 이 점을 고려해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하나하나 사안마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세수 추계가 계속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국회법 개정안 관련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세법을 연결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했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했었지 않습니까. 그 거부권 행사가 적절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마디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이후 상임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제가 문제 제기하겠지만 이건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약하면 작년 말 합쳐서 약 80조 이상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자리를 통해서 이 말씀 드릴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후 세법 개정 논의할 때도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 또는 세수의 절대치가, 나라의 곳간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후에 개별 세법 하나하나 논의할 때 영향이 어떤지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현안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 할 때 아마 동일한 또는 유사한 질의들이 계속될 걸로 보기 때문에 기재부차관님은 답변 준비 잘하셔서 그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오기형 위원님 발언 관련해 가지고 조금만 보탤게요.

작년 24년도 세입결손이 다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30.8조, 29.6조 원 대비 한 1.2조 원 조금 더 늘었네요.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여하튼 추가적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30조대에서 막기는 막았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가 금년 세입예산 확정할 때 고려치 못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30.8조 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물론 금년 중·하반기부터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세수

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벌충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30.8조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지금 추경 논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추경할 때 세입경정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것에 대한 정부 쪽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 한번 의견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수영 마찬가지로 현안질의 때 답변해 주시고요.

또 의사진행발언……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세수결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미래 토론을 위해서도 화두를 꼭 나누고 싶은 게, 세출 증가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세수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아무리 구조적으로……

지금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세입결손이 났다, 일차적으로 저희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왜 세수가 안 들어오느냐. 저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고 여야를 떠나서 저희가 책임져야 될 굉장히 항구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럽도 그렇고 해외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세출 증가율을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수가 빠지면 재정의 위기가 촉발이 됩니다. 경기로 인한 일시적인 세수 부족인지 세출 증가율과 세입 증가율의 구조적인 미스매치인지 이것을 비교해야 됩니다.

제가 12년 만에 공직 복귀해서 보니까 세출이 많이 늘어 있어요. 재정 규모가 많이 늘어 있고 이미 늘어 있는 재정 규모는, 기억하시겠지만 R&D 예산 일시적으로 깎고 이런 것들도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촉발하기 때문에 한번 늘어난 세출 증가율을 억제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데 그것을 고려해야 되고 그러면서 세제를 봐야 된다. 세제만 갖고 세 설계해서 세입을 다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 파이도 같이 키워 가면서, 파이를 같이 키워 가는 데 세제는 중심을 두고 그 세제 속에서 들어온 세입과 세출의 미스매치는 국채의 과부족으로 매꾸는 것, 제가 아는 한 그것 이상의 기술은 없고 그것은 민주당 이든 국민의힘이든 누가 정권을 잡아도 동일하게 마주치는 딜레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수 추계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세수 추계를 잘하겠다, 세입이 과부족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 답변들은 저는 이제는 좀 단편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올해 끝나는지 내년에 끝나는지 내후년에 끝나는지, 이게 내후년까지 안 끝나고 계속 구조화되면 적자국채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미래세대에 저희가 부담을 남기는 것이라서 이런 근원적인 토론들이 시작되기를 저는 꼭 촉구드립니다.

○오기형 위원 하나만……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간단한 건데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면……

방금 얘기하신 것 팩트 정리만 하면 2021년도 세수가 344.1조였습니다, 344.1조. 그리고 작년이 336.5조입니다. 그러니까 세출 증가와는 상관없이 국세 자체가 절대치가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예, 다음 주에 또 한번 같이 논의해 보고. 기재위가 계속되는 한 계속 논의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영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김영환 위원** 박수영 위원님께서 팩트하고 좀 차이 나는 말씀을 주셔서……

아마 기재부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중앙정부 지출과 그다음에 통합재정 지출, 일반정부 총지출 해서 OECD 비교치도 22년 대비 조세부담률이 일단 낮아졌고요. 조세부담률 자체가 4% 떨어졌습니다, 23년 기준으로 한 19%. 그다음에 중앙정부 지출도 낮아졌어요, GDP 대비. 그다음에 일반정부 통합재정 지출 다 지출 자체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연관돼서 설명하시는 것보다 지금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원천적으로 우리가 3년 연속 세수 부족에, 제가 보기에는 23, 24, 올해 25년도 기재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45.9조를 더 걷어야 돼요, 전년 대비 올해가.

그래서 저는 기재부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부안들 제출하실 때요 무슨 조세감면들 이렇게 그냥 안만 제출하지 마시고 이게 경제효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자료를 좀 붙여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1기 때 TCJA라고 해서 감면정책 있었잖아요. 그것 다 조사해서 경제효과들 다 분석하거든요. 정부안에는 말로만 무슨 소설을 쓰고 있어요. 법인세를 인하하면 이게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고 이게 GDP로 이어지고 또 소비로 이어지고. 그냥 무슨 시나리오 소설 쓰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가져오셔요. 가져오셔야 저희들도 검증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3년 연속 세수 평크가 예상되는 상황 그리고 지금 56.4조, 30.8조, 그러니까 한 87조 세수가 감소를 했잖아요. 올해 얼마 될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 조세소위 법안을 이렇게 논의해야 되는데, 경제학계에서는 여러 일관된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IMF조차도 조세감면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쪽에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게 경제효과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수많은 보고서들이 있는데 기재부는 보고서가 없어요, 그런 보고서가. 이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기재부 측에서 그런 자료들을, 항상 얘기하실 때 그것을 함께 염두에 두셔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또 협소리 되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딱히 의사진행발언은 아니지만 우리 기재위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발언시간을 충분히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서 법안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6)
 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9)
 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8)
 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5)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7)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0)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21)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20)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0)

-
-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3)
 -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6)
 -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6)
 -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8)
 -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9)
 -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3)
 -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3)
 -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3)
 -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9)
 -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1)
 -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13)
 -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1)
 -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0)
 -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7)
 -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4)
 -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6)
 -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1)
 -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7)
 -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7)
 -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6)
 -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1)
 -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2)
 -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1)
 -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0)
 -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81)
 -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12)
 -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3)
 - 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2)
 -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83)
 -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5)
 -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3)
 -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86)
 -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5)
 -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6)
 -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6)
 -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9)
 -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7)
 -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9)
 -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3)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5)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26)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0)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7)
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0)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9)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1)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1)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7)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1)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7)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4)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3)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7)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53)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29)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7)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7)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40)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9)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9)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0)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5)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25)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2)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4)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8)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5)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3)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3)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9)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4)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3)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01)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9)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8)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0)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9)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5)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5)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6)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0)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5)
9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4)
9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08)
9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7)
9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3)
10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8)
1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7)
1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9)
1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2)
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51)
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89)
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4)
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80)
1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0)

(11시15분)

○소위원장 박수영 의사일정 제1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08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모두 10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이 두꺼운 자료가 있고요 수석전문위원이 만든 얇은 자료가 있는데 44건이 전부 지난번 연말에, 작년 연말에 논의가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수석전문위원이 마련한 얇은 안건으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표지에 보시면 작년에 합의를 했고 현재까지 쟁점이 없는 법안들이 1번부터 22번까지고요. 23번부터 37번까지는 작년에 저희 소위원회에서 합의를 했는데 그사이에 정부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바람에 정부안으로 가결된 안건들, 거기에 관련돼 있는 안건들입니다. 마지막 38번부터 44번까지는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는데 야당에서 반대하셔 가지고 본회의에서 빠진 것, 즉 부결된 안건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즉 1번부터 22번까지는 쟁점이 없고 23번부터 37번까지는 좀 논의를 해야 되고 38번부터 44번까지 7건은 민주당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비쟁점 법안인 1번부터 22번까지는 아주 신속하게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것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항목입니다.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적용률 적용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건입니다. 간사 협의 결과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존 유예기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도록

간사 협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항목,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 사업자에 대한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 부여와 관련해서 간사 간의 합의 결과 교차검증을 위해 국내 판매 또는 결제 대행하는 외국법인 등에게 거래명세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 번째 항목입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 등에 대해서 비자발적인 재산권 이양 등을 감안해서 유형별로 감면 한도를 5%p 각각 상향하도록 간사 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항목입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조세특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등에 대해서 간사 협의 결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 종합 한도를 연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5년간 총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한도 상향하기로 간사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시 우대 조치와 관련해서 간사 간의 합의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자체보다 15%p 높은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소득공제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득금액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구간을 새로 신설해서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24년 세법 개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간사 합의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곱 번째 항목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장기가입자 임의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납입개월 수가 120개월 이상인 장기가입자가 경영 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간사 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항목,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에 대해서 24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40%에서 50%로 10%p 상향 조정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항목,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수도권 소재 출판업 중기업을 추가해서 세액감면율 10%를 적용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항목, 피출자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출자법인의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에 대해서는 그 지원 대상을 경영지배 관계 자회사로 한정하고 자산 양도차익 중 자회사 지원 부분만 과세이연을 적용하도록 하고 과세이연 기간을 조정했습니다. 원안의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으로 하도록 간사 간에 합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항목,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과 관련해서 정부 대안으로 합의를 했는데 정부 대안의 경우 공제율 조정을 20%에서 10%,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대회로 한정하여 적용기한은 2029년 말 원안에서 26년 말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항목,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관한 항목은 채무 출자전환 차액 상당액을 대손충당금 관련 손비 계상 없이 세무 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방식으로 수정하였으며 시행시기를 반영해서 25년부터 기존 출자 전환 손실의 10%씩 매년 손금산입을 할 수 있도록 원안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자회사 회생 시 자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 상승분만큼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합의 하였습니다.

5페이지 열세 번째 항목,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에 대해서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5%p 상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항목,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해서 24년과 25년 투자분에 대해서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열다섯 번째 항목,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운 분야 추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 수단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항목,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장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 투자를 새롭게 포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항목,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에 대해서는 24년 12월 31일 현재 10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25년 6월 30일까지 해당 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에 개별소비세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7페이지 열여덟 번째 항목,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대상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하되 납부 유예 신청을 위한 소득요건 중 총급여액은 현행 과세 직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항목, 국세 부과·징수·송무 등에 특별 공적이 있는 국세공무원에 대한 포상 지급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국세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국세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근거를 법률에 신설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8페이지 스무 번째 항목,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시에만 장부 제출의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간사 간에 합의하였습니다.

9페이지 스물한 번째 항목,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 등 항공기 부분품 관세 감면율 상향 및 감면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관세 100%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관세법 관세 월별성실납세신고제도 신설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심사기한이 개정안에 1개월로 되어 있는데 관세사협회의 주장은 3개월로 이견이 존재하고 관세사 등의 불성실 심사에 대한 책임 부과 방안 등이 부재되었다는 문제 제기로 인해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 지난번에 소위나 소소위 협의할 때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했을 텐데 그동

안에 한 두 달 사이에 입장 변경이라든지 상황 변경된 것 있으면 그것 위주로, 일일이다 동의한다 안 한다 할 필요는 없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3페이지 8번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과 관련 해서요. 지난번에 24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 40%에서 50%로 10%p 상향 조정해 주시기로 합의를 해 주셨는데 이미 시기가 지나갔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24년도에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25년도 사용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정부에서 또 다른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제시한 안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폭이 좀 좁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간이과세자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을 늘리는 안을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그 안을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정부 측에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것 1건입니까, 정부 측 의견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이 22건에 대해서는 1건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22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 그대로 통과시키면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신영대 위원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지.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그러니까 2024년은 안 하는 것이고 25년 결로 해서 통과시키거나 또는 정부안 다른 게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관련된 법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제출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과시키면 이것을 다 포괄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습니까?

임광현 위원님 전문가시니까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영환 위원 맞아요, 그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완전 100%는 아닌데……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셔야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어쨌든 전통시장이 아닌 부분들도 전국에 산재한……

○김영환 위원 이것은 소비자 관련된 부분이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것도 소비자 관련입니다. 전통시장만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간이과세자를 다 해 줄 거냐 그 차이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자, 일단 임광현 위원님 발언……

○김영환 위원 소득공제 자료 8번은……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먼저 발언 신청하셔 가지고요.

○김영환 위원 아니, 잘못 얘기하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그다음 발언 받아서 하시지요.

○임광현 위원 여기 22번 안건이 소소위에서 비쟁점으로 결정이 났는데……

○소위원장 박수영 22번?

○임광현 위원 예, 22번까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작년에 조세소위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짧게 열렸습니다. 일주일

에 겨우 다섯 번, 1회독 하기도 바쁘게 그렇게 논의가 돼서 소소위로 넘어갔고 소소위에서 그냥 결정이 나 버렸는데 국가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조세가 이렇게 부실하게 결정이 돼도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들고요.

저는 그중에 10번과 12번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조세소위 때는 재심사였는데 소소위 때 비쟁점으로 넘어갔는데요.

우선 10번 피출자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출자법인의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제 예를 하나 들어 보면 A라는 지주사가 있는데 여기는 B라는 건설회사가 있고 C라는 핵심 회사가 있고 D라는 기타 회사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B라는 건설사가 굉장히 경영 위기가 온 상황에서 이 B라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채권단이나 이쪽에서는 핵심 자산인 C를 매각할 것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원해 주고 싶은 경우는 정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주자는 건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D라는 어차피 처분하려고 했었던 그 회사를 이 기회에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혜택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자산매각 과세특례가 출자법인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이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하는 그런 약용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2024년 중 모회사의 지원 사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하는 이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2번의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통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출자전환한 경우에 해외 현지에 지급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리베이트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대여금 등으로 임시 계상하는 행태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자산을 채권 임의 포기 형태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계 상황이 심각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것까지 해 주는 경우에는 조세 정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개정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세제실장님, 임광현 위원님 지적한 두 가지 말씀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먼저 첫 번째 채무상환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채권자가 요구하는 어떤 중요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아무거나 팔아서 거기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을 자회사인 B건설사한테 지원하는 부분은 적용되지 않고 어쨌든 A지주사하고 산업은행이 됐든 다른 은행이 됐든 재무구조 개선계획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은행이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 자산만이 의미 있는 자산이고 이 자산을 매각해라,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포함된 그 자산 매각의 경우에만 적용을 해 주는 걸로.

그래서 임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은 보완 장치가 있다라는 말씀……

○임광현 위원 그 보완 장치가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지금 자료에는 그런 내용

이.....

○소위원장 박수영 첫 줄에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 상세한 자료는 저희 조문에 보면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포함된 자산 양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재무구조 개선계획은 대출해 준 은행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포함될 수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어떤 판단을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위원장 박수영 12번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다음에 해외건설자회사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해외건설사가 어떤 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투명하게 또는 사업 목적 외로 잘못 사용된 부분까지, 거기에 따른 대여금까지 손비를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비를 인정하는 범위는 공사 또는 운영자금, 인건비 등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된, 원래대로 했으면 손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업상 비용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게 정말 리베이트로 썼는지 사업상으로 썼는지 조금 불투명, 그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일정 부분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전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제도를 설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제도 설계 자체는 사업상 사용한 용도로, 그때 사용한 대여금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사업상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당연히 손비도 부인되고 또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과세특례도 부인이 되는 그런 구조로는 일단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통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실제 집행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잘 가르마를 탈 수가 있습니까? 실제 사업에서 일어난 것이나 아니면 임광현 위원님의 염려하시는, 리베이트 아까 이런 말씀 하셨는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국내에서 건설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비용을 떠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모든 세법은 이게 사업상 비용이 아니면 손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국세청 집행 과정에서 작동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상당히 큰 규모의 법인들에는 또 정기적인 조사를 하니까 어느 정도는 통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항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우리가 논의를 다 했던 것이기는 합니다만.....

오기형 위원님, 몇 번 말씀하실까요?

○오기형 위원 그러면 개괄적인 것들 중에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싶은 것들인데요.

1번부터 22번까지 항목 중에서 24년도에 적용되는 것들은 이미 해가 지나 버렸고, 짹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중간중간에 24년도 것이 언급되더라고요. 적어도 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인식이 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기본적으로는 작년에 합의를 하시면서 큰 틀에서는 당연히 오 위원님 말씀대로 세법이라는 것은 25년 1월 1일 이후가 적용 대상인데 작년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24년 귀속분을 하자 그래서 25년에 신고할 때부터 하자라는 부분으로 합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조금 덜 부담스러운 건 어쨌든 24년이 끝나기 전이니까 금년에 속하는 부분을 소급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이 그거를 12월 말에 확정해서 공표해서 시행하는 부분인데 그게 12월 말이 아닌 이제 2월 달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2월 달로 넘어왔으니까 작년 것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아니면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조세소위에서 결정하실 사항이고요.

그런데 최소한 법인세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신고의 출발이 3월 말에 시작하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결정하나 지금 2월 달에 결정하나 여전히 작년에 1년간 있었던 일을 법인세 신고 부분부터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정부는 작년에 결정하셨던 그 합의 내용을 저희들은 존중하고 그대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소득공제 같은 부분, 연말정산과 관련된 것은 이미 사실상 연말정산이 99% 근로자들이 다 끝났습니다. 끝난 걸 다시 되돌려 가지고 갑자기 국세청에 시스템을 고쳐라, 전국에 있는 2000만 근로자들 연말정산 다시 해라 그것까지는 불가능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빼고 새로운 제도를, 금년도분을 근로자들을 위해서 좀 해 달라 소비 증진을 위해서 해 달라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면 이 지점에서 지금 이후의 토론의 기준이나 방식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7월 달이나 8월 달쯤에 정부가 세법 개정안 발표하고 방침을 내놓고 나중에 될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 다 했는데 법 통과 시점은, 그게 되지 않은 걸 가지고 그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고 그게 논거가 아니다 이런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기형 위원** 지금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방식 자체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평상시, 일상 시에 토론하고 일상 시에 합의된 걸 가지고 그다음에 정부 발표하시라 이런 이야기고요.

다음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것 쭉 보면 1항에서도 유예기간을 23년 말에서 26년 말로 하니까 작년 한 해가 또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쭉 일부 항목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6항도 좀 관련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1항, 5항, 6항.....

○**오기형 위원** 8항은 24년은 적용이 곤란하다 했고.

넘어가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10번이 그렇고요.

○**오기형 위원** 10번도 2024년 모회사 지원사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소급 적용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고.

그다음에 14번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14번도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24년 투자분부터 한다니까 이것도 소급 적용인 것 같아서 이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좀 있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맞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 세법 적용 방식의 기준에 관한 문제라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나오는 24년도에 적용되는 것은 한 건 한 건씩 재검토해서 판단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태호 위원**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게 그때 합의된 사항인데 전체회의를 앞두고 그 합의사항이 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축약해서 논의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그때 이미 약속이 깨진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깨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고, 다만 이미 기논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축약해서 논의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자, 우선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심의 방식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고 지금까지는 연말에 왕창 모아서 세법안 논의를 했다면 앞으로는 연중 기재부 또는 의원님 안이 올라오는 대로 논의를 하기로 우리가 그렇게 의논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렇게 운영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4년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중요한 거는 방금 야당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하나하나 더 따져 보는 게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고 또 오기형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소급을 안 하는 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어쨌든 지난해 연말에 논의를 할 때 이 부분은 꼭 소급을 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신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한 두 달 소급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1년을 소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쭉 지금 올라와 있는 안건들의 내용들을 보면 작년에 결정했던 작년 1년분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 대전제가 달라진 게 없다. 이거는 지금 봐서는 굳이 작년을 해 줄 필요가 없다, 올해부터 하면 충분하겠네 이런 내용들이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물론 작년에 받아들인 것을 안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큰일 나는,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작년에 나름 잠정 합의를 했던 그 의사결정 내용들이 충분히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존 합의 내용이 좀 더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위원장 박수영** 아까 누가…… 김영환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던가요?

아, 안도걸 위원님이셨군요.

○**안도걸 위원** 지금 조세특례 관련해 가지고 논의들이 충분히 됐을 것이고, 그런데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종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조세 감면이 이루어진다, 이게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업종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한 업종 중에서도 나도 어렵다 해 가지고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어 보이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 당국에서 제대로 검토를 좀 하셨는지 싶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도권 소재 출판업 중기업’, 그렇지요? 이번에 한강 작가 노벨

상 수상 계기로 해서 좋습니다마는 또 수도권은 수도권 정책이 있지 않겠나요? 그런데 중소기업까지 이런 부분에서는 혜택을 주고 있지 않은데 출판업에 한해서 준다 이렇게 하면 비출판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외 업종에서도 하지 않겠느냐 싶고.

11번도 마찬가지지요. 이스포츠 우리가 계속 키워야 되고 하는 건데 또 대회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 비용을 세제 지원한다 이거는 약간 낯설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12번 해외건설업, 해외건설업만 이렇게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해외건설업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특례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진출해 있는 여러 업종들도 많을 텐데 만약에 그쪽에서도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하면 또 이런 유사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제가 한번 조금 여쭙고 싶고.

14번 임시투자세액공제, 지금 중견·중소기업에 한해서 연장을 좀 해 주고 있는 건데 실은 어렵기는 석유화학 업종 여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중국의 덤핑 공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거진 초토화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산업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겠다 아래 가지고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고부가 가치 제품 쪽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R&D를 하고 또 실증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좀 해 달라.

그리고 이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일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도 중에, 해가 넘어가니까 이제 중단이 돼 버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어려운 상황을 넘기 위해서 긴급한 투자들을 했는데 이게 해 넘어서 중단이 돼 버리니까 그게 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 상황에 직면한 이런 산업들은 좀 예외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14번에 관해서는 대기업에도 연장해 주자 이런……

○안도걸 위원 예, 대기업인데 위기 업종들.

○소위원장 박수영 예, 그러니까. 이건 다 그쪽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14번부터 세제실장님 답변 좀 해 보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14번 그러니까 위기 업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세제실장이 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석유화학 업종 어려운 부분에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요. 현재 업계 중심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지 새로운 투자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규 투자가 일부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설비 감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면 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세제 쪽에서 지원이 필요하면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세제실장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좀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어쨌든 조세특례를 저희들이 법안을 만들 때부터 또 소위에 와 가지고 보고드리고 논의드리고 또 국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항상 큰 원칙은 굉장히 특별한 혜택인 조세특례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공평하게 운영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필요한 산업은 육성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고 어려운 산업을 구조를 해야 되니까 또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면에서 방금 안도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판산업·이스포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정부안이 아니고 의원입법안으로 나와 있듯이 솔직히 초반에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진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또 찬성 의견도 주시고 반대 의견도 주시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 정도까지는 해도 큰 무리는 없다, 나름 의미는 있다라고 해 가지고 소위와 소소위를 거쳐서 잠정 합의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절대 안 된다는 부분들은 저희들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다. 출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대안을 낸 거거든요, 당초에 나온 안은 너무 세서 저희들이 못 하겠다, 그리고 이스포츠의 경우에도 양당 간사님 잘 아시다시피 당초 원안은 너무 강하다, 그래서 대상 지역이나 울을 저희들은 이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과세 형평이 깨지지 않으면서도 수도권·비수도권 또 업종 간 이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결정을 했고 이게 뭐 반드시 최선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합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또 조특법 임투에 있어서 저희들은 전 업종에 대해서 대기업을 하는 게 정부안이었습니다. 그 정부안대로 저희들은 위기 업종뿐만 아니고 작년의 경우에는 전 업종을 하자는 게 원래 정부안이었고. 다만 어떤 세수의 문제나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업종 간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러면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중소·중견에 한해서만 하자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안 위원님이 업종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위기 업종을 말씀하시면 사실은 위기 업종의 정의가 뭔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물론 필요하면 논의를 통해 가지고 정해 주시는 건 가능한데 어쨌든 임투에서 하나의 업종을 또 새로 만든다? 그건 새로운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도걸 위원** 저도 조금만 법안……

○**소위원장 박수영** 추가로 하시지요, 이왕 하신 거.

○**안도걸 위원** 임투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구조조정, 그러니까 저희가 경쟁력을 상실한 분야에 대해서 생산 역량을 감축시키고 설비를 감축시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부가가치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그래야만 그 산업들이 고도화가 되면서 또 어떤 지역경제를 살리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절실하다. 그리고 그런 쪽에 굉장히 투자들이, 그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주안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또 예를 들어서 위기 업종이 뭐냐라고 이렇게 지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세

제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정이 될 경우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 산업과 관련된 어떤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평가하고 지정되는 어떤 제도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한다면은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우선 박성훈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셔서, 그다음에 신영대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조세 정책이라는 게 최선은 아니지만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지난번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내용은 다 무너졌다, 깨졌다라고 말씀도 있으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법안이 올라오고 그 과정에서 조세소위 위원님들과 또 여야 간사님들 소소위를 거쳐서 사실상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이었는데 기술적인 부분들을 처리하는 부분과는 별개로 해서 정부 당국에서 조세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당시와 지금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런 틀을 뒤바꾸거나 내용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만 지금 와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거나 임투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위기 업종 이렇게까지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그동안 저희가 이러한 법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던 그 과정과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복기해 봐야 되는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방향을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하여튼 중요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은 제가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제한은 있습니다. 우리 전체회의 전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는 있기 때문에 발언하시되 축약해서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 저는 17번 항목,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하면 현재 우리가 여야 간사님들 간에 협의가 돼서 정부 측의 입장을 들어서 1번부터 22번까지는 비쟁점 법안으로 정리를 해서, 저도 처음에 ‘그래, 심도 깊게 저희 당을 대표하는 간사님,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간사님이 협의를 했으면 문제가 없겠다’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결국 오늘 논의되는 것들이 당리당략에 의해서 얘기되는 게 아니고 실제 논의된 내용들이 자꾸 세금만 깎아 주면 우리 세수는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리고 여기를 깎아 주면 다른 업종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정도의 합리적 토론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간사님들이 협의가 됐다고 하고 또는 이게 100% 협의된 게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이게 합의됐다, 합의가 깨졌다 이걸 떠나서 충분히 소위 위원들 사이에 논의할 만한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왔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17번 항목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시기가 지나서 날짜를 조정한 합의안을 낸 것 같아요. 2024년에 통과가 되었으면 좋았는데 못 해서.

그런데 보니까 이 법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그전부터 법안이 있으면서 2009년

도, 2016년도, 19년도, 20년도에 실제 교체 수량을 보니까 나름 의미 있는 숫자, 판매가, 교체가 됐어요. 38.2만 대, 5.4만 대, 8.2만 대, 7.2만 대.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은 자동차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서 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환경에 유해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경유차 교체의 목적으로 있고 두 가지 목적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맞습니다.

○신영대 위원 저는 좋아요. 좋은데, 여기에 경유자동차만 제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번 기회에, 앞으로 정부나 우리의 입장들 또는 현재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반영해서 교체하는 대상 차량 유형을 경유차만 제외하는 게 아니라 휘발유차까지 일괄 제외하고, 예를 들면 전기차·수소차 해서 친환경차량에 대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특히나 현재 어려운 업종들 지원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물론 현대차나 기아차가 주력일 텐데 수출도 어느 정도…… 지금 자동차가 일정 정도 대한민국 경제를, 무역수지를 잘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캐즘(chasm) 상태에 있고 후폭풍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했던 이차전지 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종들 도와준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경유차만 제외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할 경우에 교육세를 포함해서 소비세 감면액을 좀 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마는 또다시 논의하면 될 것 같고요.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하람 위원 우선 9번 출판콘텐츠 부분, 물론 이번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주신 것은 반가운 부분입니다만 사실 출판콘텐츠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저희가 원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리더라도 사실상 조세 부담, 그러니까 조세 감소 부담이 별로 없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작한 만큼, 시작한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 출판콘텐츠 산업이 퀸텀점프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 만큼 꾸준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11번 이스포츠대회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비수도권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은 반대입니다. 이게 왜 그려냐 하면 이스포츠라는 게 수도권에 위치한 대회나 업체들도 아직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요새 이스포츠도 되게 핫하고 엄청 잘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페이커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SK T1 같은 경우도 작년에 2023년 기준으로 120억 순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포츠가 아직까지 완전히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것을 굳이 비수도권에서 하는 대회로 한정한다 그러면 효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성훈 위원 간단하게, 자료집에도 나와 있지만요.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었는데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이스포츠 민간 경기장 9곳이 모두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포츠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게 아시안게임에 들어가 있는데, 26년으로 해 놓은 게 아시안게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저는 간단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도 이 22건을 보니까 정말 언급하고 싶고 또 검토하고 싶고 다루고 싶은 게 막 무궁무진하게 떠오르는데…… 저희가 현실에서 정부가 일하도록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정부가 큰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간사님 간의 어떤 협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끌고 갈지, 저도 어느 정도까지 발언해야 될지 범위도 못 잡겠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22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 또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부 측에 크게 이견이 없다 싶어서 전부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자면 플러스마이너스가 다 있고 의견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세법 개정안은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작년 말에 우리 기재위는 법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말씀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차관님이나 세제실장이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주시고, 아까 8번이 그랬다 그랬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소위원장 박수영**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이다음에도 우리가 22개, 또 법안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2개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 좀 지적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22개는 잠정 의결해 놓고. 나머지 22개를 또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세제실장님께서 정말 문제가 있다 싶은 것들이 남아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그것은 빼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아까 제가 17번 항목,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마지막 두 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기본 입장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전기차로 한정해서 하자,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렇게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못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300 또는 400을 지금 공제해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노후차를 교체하면서 하면 100만 원을 더 해 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휘발유차 빼자, 전기차만 하자. 못 할 것은 없는데 또 그렇게까지 오로지 전기차로만 몰아줄 필요가 있느냐. 저희들은 노후차 교체라는 수요 진작 또 환경과의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노후차가 휘발유차로 가는 것만 해도 저희들 정책 목표에서 더 필요하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하나의 정책 목표를 더 얹으신 거고요, 위원님은.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정도가 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스포츠의 경우에는 천하람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의 문제는 이게 스포츠운영단한테 해 주는 게 아니고 이 게임을 개발한 게임사가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사의 자기의 홍보 행사입니다. 홍보 행사인데 그걸 정부의 세금을 들여 가지고 개최 비용의 10%, 20%를 대 준다? 저희들은 그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고요.

다만 거기다가 대부분의 대회가 수도권에서 열리고 있다, 특히 크게 흑자를 남기는 유망 게임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아직 지방은 그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대회 자체가 굉장히, 아무래도 운용비용이나 수익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방에 한정해서 해

주는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처음에는 당연히 전체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고 꼭 해야 된다면 지방 정도 한정해서 한 2년간 하고 항구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간사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제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여러 개 더 빨리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합의를 했고 저희들이 고민 끝에 이 정도면 가능하다,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 ‘아, 이것은 다시 한번,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은 현재 22개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까 8번은 빼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그뿐만 25년으로 바꿔 주시면……

○소위원장 박수영 8번은 25년도니까 그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8번은 새로운 제도로 바꿔 달라.

○소위원장 박수영 그건 법안을 내셨다고 하니까 법안 논의할 때 보면 되는 것이고. 8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장단점은 있으나 정부 입장에서 볼 때 크게 문제는 없다,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것은 다시 또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12시가 되었습니다.

○오기형 위원 하나만, 아까 말씀하신……

○소위원장 박수영 하나만, 예.

○오기형 위원 기본적으로 기존에 논의했던 것들을 많이 존중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한 가지, 24년도 적용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빼고 꼭 들어가야 되는 것만 설명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제도를, 그동안 하는 방식이 정부가 발표하고 추인하는 식으로 막 가는 것, 저는 이런 방식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해가 지났고, 지났다면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별도로 검증해 놓고 검증해서 오케이 되면 가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 내용 중에 24년 적용되는 것은 다 뺏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저희가 간사 협의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정부 발표가 있고 그것을 믿고 투자를 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신뢰라는 측면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런데 국회가 법 개정하기 전에 한 걸 가지고 그걸 인정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이슈가 분명히 그때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발표를 믿고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신뢰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다면 기재부에서 빼고 그렇지 않으면 하자 이렇게 됐던 건데 세제실장님, 다시 한번 총괄해서 24년도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익금 불산입률이 조금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 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23년 말까지는 늘어나는 규정을 유예해 줬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그걸 못 쫓아오고 있으니까 한 3년을 더 유예해 주자는 건데,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은 그러면 24년도분은 내시라, 과거에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서 조금 더 세부담을 부담하시고 25년·26년 두 해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우리가 강화시켰던 그 규정을 맞출 수 있는 유예를

드리겠다. 그 정도 하는 것은 기업들한테도 큰 무리도 없고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그것도 기업들한테 부담이기 때문에 발의하신 의원님은 기왕 할 것 같으면 3년을 다 해 주면 되지 또 그렇게 1년을 자르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다 유사한 부분인데, 그런데 결국은 개별 기업들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것 있다고 해 가지고 절대적으로 기업이 결정적인 위기에 처하고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사실.

○**오기형 위원**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없지만 그래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의원입법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취지가,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임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부안으로 나간 건데 최소한 중소·중견 이상은 정부가 약속했던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작년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한 번도 발언 안 하셨던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방금 그 부분 관련돼서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24년에 대해서만 빼고 다시 25년,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에 25년·26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연장을 해 준다고 하는 것들이 국회의 사정 때문에 민간기업의 신뢰라는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기간도 남아 있고 여기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24년에 저희들이 충분히 적용해 줄 만한 타당성이 있는 것들이어서 국회 합의가 늦어지는 것들, 이걸로 인해서 일반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능하면 24년분도 다 이렇게 반영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14번에 관해서 아까 안도걸 위원님의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안도걸 위원님은 앞에 대기업을 깎은 부분도 도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장님 의견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대기업 깎은 것에 대해서 예로 석유화학 산업을 드셨는데 그 취지는 저희들도 100%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당초 정부안은 대기업도 해 주자는 거였고 그런데 세수감 등을 고려해 가지고 잠정 합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저희들은 대기업 전체를 해 주자는 기본 입장은 동일한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석유화학의 예는 충분히 좋은 예기는 하지만 거기서 석유화학으로 끝내는 것도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기 힘들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정부가 정말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서 위기 산업을 골라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은 솔직히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다면 전체를 다 하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위기 대응지역이라는 또 다른 카테고리를 내셨는데 특정 지역으로 하는 게 어떤지는…… 고용위기지역도 있고 산업위기 대응지역도 있고 다양한 지역이 있습니다. 또 인구감소지역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으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 또 다양한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이 가장 적정한 방식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자체도 저희들은 굉장히 새로운 선례로서 쉽지 않은 선례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의 구조조정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제도적인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준을 맞춰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수영 이 건은 지금 정부 측에서 바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안도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하신 부분을 차후에 우리가 반영을 해서 개정을 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와서 산업위기지역, 소멸지역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이것 하세월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도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는 하고 그다음에 더 반영해서 새로운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2시가 넘었는데요. 22개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점심시간에 정태호 간사님하고 다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안건이 22개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고 2시에 속개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오전 법안심사소위는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뵙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요.

오늘 22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 의견 좀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이 명확한 게 3개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국내 자회사요. 일단 저는 현행도 이 구간 자체가 형평성·비례성이 안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맞는데, 그때 내국법인 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유예했는데 이거를 3년 늘리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이 요건 맞추기 위해서 했던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기재부가 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시행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제에 비례성·형평성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익금 불산입을, 왜냐하면 50%만 하더라도 100% 다 익금 불산입을 시켜 주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자본투자 대비 배당에 대해서 비례성이 확보가 안 되고, 구간이 3개 구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20% 획득했을 때하고 19% 획득했을 때하고 한 50% 차이 나거든요, 구간 형평성이? 차제에 구간의 비례성 조정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0번 관련해세요. 우리 박수영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거라 제가 참 어렵긴 합니다만 이게 일단 재무구조 개선을 하려는 자체회사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출자회사까지 이제 확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출자 부문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조세특례를 계속 확대하는 여지가 있는 것들 그리고 일반적이

고 보편적인 것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도를 제한하는 게 옳다. 차라리 보조금 주세요,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24년 중 모회사 지원 사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제 발언 끝나고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번인데요. 특정 업종에 대해서 이미 23년도 세법개정안 통해서 자회사 대손 충당금 손금 특례를 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출자전환까지 늘어났어요. 왜 건설회사에만 하지요, 이 업종에? 그러니까 뭐냐하면 특례를 주려면, 지금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업종들이 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멕시코에 관세 25% 부과되면 전자업종들 어떻게 하지요? 그다음에 철강, 포스코 그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계속 과세특례제도가 확대될 여지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차라리 예산정책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대 조치하는 것들은 정말 특례에 특례를 또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 의견 표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작년 연말에 이어서 오늘 또 여러 시간 동안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의견들 주셔서, 기획재정부와 국회 수석전문위원께서 앞으로 정책 입안하시고 검토의견 하실 때 깊이 고민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논의 그리고 작년 논의를 바탕으로 간사 간 협의를 했습니다. 간사 간 협의 결과 소위 자료 1번부터 22번까지 안건 중에서 현재 적용이 곤란하다고 하는 8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은 우선적으로 의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우려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기재부와 수석전문위원께서 앞으로 정책 추진과 검토하실 때 틀림없이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당 안건 의결 이후에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안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김영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예.

○ 김영환 위원 부대의견 달아 주십시오, 제 의견.

○ 소위원장 박수영 예, 방금 발언하신 것 바탕으로 부대의견을 만들어서, 속기록에 있을 테니까 부대의견 만들어서…… 부대의견은 지금 준비가 안 되니까 나중에 부대의견만 모아서, 여러 건이 있습니다, 부대의견이. 모아서 한 번에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실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4항, 총 2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16항, 17항, 제19항 등 총 4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금방 의결한 게 몇 항이었습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항이 43개라서 너무 많은데 읽어 드릴까요?

○김영환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영 여기 표시가 다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대안 반영을 하고 폐기 대상 항목은 43건입니다. 21항, 26항, 29항, 31항, 34항, 37항, 38항, 40항, 42항, 43항, 44항, 45항, 49항, 50항, 54항, 55항, 56항, 57항, 59항, 61항 등등 인데 43건이나 되기 때문에 행정실에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종부세법, 의사일정 제98항입니다.

이것은 오늘 자료가 아니고 심사자료 두꺼운 것의 번호겠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의사일정 번호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의사일정,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아니, 얇은 것……

○소위원장 박수영 아, 얇은 거 2장짜리?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신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갖고 계십니다.

○김영환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조특법 10번·12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대의견 달기를 소망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부대의견 아까 주신 것 외에 추가로 또 있습니까, 아니면 아까 하신 것 그걸로?

○김영환 위원 아까 한 것 그대로 달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까 하신 걸로.

그러면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부대의견 전체를 놓고 또 위원님들 의견 받아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98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및 제100항, 총 2건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및 제102항, 총 2건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22번까지는 논의가 끝났고 22번까지에 붙게 되는 부대의견은 행정실에서 정리가 끝나는 대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자료 23번부터는 한 건 한 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23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알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 23번 항목입니다. 소득세법이고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 확대에 대한 부분으로 24년도 세법 개정으로 주식 등의 이월과세 기간을 1년으로 세법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간사 협의 결과는 주식 등의 이월과세 기간을 정부안 통과 1년보다 더 확대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소소위에서 우리가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본회의에 통과된 안은 1년으로, 정부안대로 통과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정부안 통과되고 나서 바로 고치는 건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안 통과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두자는 간사님 의견 계시고요.

또 조세 전문가인 임광현 위원님이나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결국은 세부담을 회피하는 걸 막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막자는 건데, 다른 부동산은 10년 이월과세인데 주식 같은 경우에 1년으로 했고 간사 협의 결과나 저희들 생각은 1년이 짧으니까 2년, 3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년이 적합하다고 하는 그런 논거가 있습니까? 1년, 2년 중에 고르라고 하면 어느 게 적당합니까? 길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여러 가지 정책목표가 있겠지만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회피를 최대한 막는다는 차원에서는 좀 긴 게 좋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1년으로 가져온 것은 주식하고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고 새로 도입하는 제도다 보니까 시작하는 의미에서 1년으로 가져왔고요. 그런데 1년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위 과정에서 시작하는 의미에서도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큰 부작용 없이 오히려 더 좋

은 의견이다 해 가지고 합의가 됐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쨌든 한 달 남짓 지났는데, 우리가 공포를 하면 3월 중순쯤 공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짜로 끊어 가지고 한 두 달 반은 1년 또 나머지 9개월 반은 2년 이렇게 하는 건 세법의 안정성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2년으로 한다면 올해는 1년, 내년 이후부터는 2년 이렇게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정태호 간사님이 그래도 이미 고쳐졌는데 그건 필요하면 정기국회 가 가지고 정부가 가져오거나 의원입법을 내시면 되지 어차피 내년부터 할 거면 굳이 지금 고친 것 또 고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임광현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임광현 위원 말씀을 하라는 취지로……

○소위원장 박수영 그런 건 아닙니다. 조세 전문가시니까……

○임광현 위원 저도 지난번 조세소위 때 조세회피를 막는 차원에서는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해야 효과가 있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금투소득 세 때문에 소득세법 정부안을 동의해 주다 보니까 1년으로 통과가 됐는데, 어차피 세법이라는 게 그래도 뭔가 예측 가능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지속가능성이 있고 해야 되니까 1년 통과한 것을 또 지금 2년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2년의 방향은 오히려 괜찮은 것 같은데 세법이 막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는 15건에 대해서는 통과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것이라 특별하게 우리가 다시 개정해야 될 사항이 없으면 다 똑같은 이유로 다음번 개정까지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 보기는 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된 걸 다시 개정할 사유가 특별히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된 법안들이 뒤에 얼마가 있는지 제가 체크를 못 해 봤거든요. 같은 취지라고 하면 굳이 그런 내용들을 다 논의하기보다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설명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해 주시는 것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기는 한데 세월이 또 한 2개월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들 기억을 다시 살려 드려야 되는 면도 있고, 이게 의논을 하다가 합의가 되는 쪽으로 가면 다음번 정부의 개정안이나 의원들 입법 발의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면이 있어서 조금 짧게라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3번은 그래서 시행시기 때문에 다음에 논의하고 방향은 옮다는 데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한 걸로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4번, 소득세법입니다.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24년 세법 개정으로 정부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정부안 내용을 보시면 사모국외투자기구에 대해서도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미적용하는 안으로 지난 정기국회 때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더하여 간사 협의 결과는 비거주자의 투자 편의를 위해서 비거주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정정훈 정부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수석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24년에 개정이 됐고요. 그때도 저희들이, 지금 WGBI 가입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해외 투자자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조세회피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간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당시 논의됐던 내용을 좀 급하게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간사단 회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현 시점에서는 이 방향대로 다시 가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절차적이나 규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 제안했던 이 부분은 다시 철회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개정 필요 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법안을 제출해서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재부는 이건 그냥 철회하고 넘어가자고 하시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수석전문위원님.

○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5번, 법인세법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적분할에 대한 지분의 연속성 관련 적격분할 요건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통과되었는데 인적분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건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사 협의 결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보다는, 적격분할 요건 변경 취지는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배정을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개정을 반영해서 법문에 보다 명확하게,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의 주식배정의 방법에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의원안이었는데 정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정정훈 지난번 소위 과정과 간사 간 협의 논의하실 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설명하신 듯이 좀 포괄적이다,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느냐, 시행령에서 규정할 사항들 중 조금 더 핵심적인 걸 법으로 옮겨자는 내용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했고 그렇게 잠정 합의가 된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련 내용들이, 이미 고쳐진 법에 따라서 시행령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미 입법예고가 끝났고 시행령이 이제 곧 공포될 예정인데 갑자기 법 규정이 다시 고쳐지면 저희들이 시행령을 또다시 수정해야 되거나 이런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보고드린 내용과 결정하신 내용에 전혀 차이는 없습니

다. 그래서 지금 와서 좀 더 법의 완비성을 기하자고 하는 취지였지만 아까 박성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는 좀 보류를 해 주시면,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관계없는 것이니까 다음에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번,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6번은 24번이랑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예, 그러시지요. 26번, 24번은 동일한 사항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7번은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 부과 근거에 대해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안이 부가가치세 수시 부과 근거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세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사 협의 결과는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즉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시행령에 정하는 사유를 법률에 일부 상향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이 부분은 앞서 보고드렸던 3번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정된 내용이니까 기존 그대로, 다음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기재부의 시행령도 의원님들 발의하신 법안과 맥을 같이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내용은 똑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28번으로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8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8번 사항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한 납입기간 단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24년 세법 정부안이 통과돼서 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을 위한 필수 공제금 납입기간을 이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는 안이 정부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간사 협의 결과는 납입기간 완화 이외에도 기업의 폐업·해산 등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필수 납입기간 3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간사 협의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 이건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혀, 단순한 자구 수정이나 위임 규정의 정비 차원을 떠나 가지고 납세자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그때 천하람 위원이 좋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거의 전원일치로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반영해 주신다는데 무슨 의견이 있겠습니까?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간사님, 어떻습니까?

○정태호 위원 반영해 준다는데……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29번으로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9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9번은 공장이전세액감면 제도 적용 시 과거 감면기업 적용 제외 및 동일업종 영위기간 요건 추가 등에 대한 사안으로 정부안이 통과된 내용을 보시면 공장이전세액감면 제도 적용 시 과거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던 기업을 제외하는 안으로 지난 정기국회 때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간사 협의 결과는 공장 지방이전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을 제외하고 있는데 새로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에 제외되지 않도록 좀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기존 공장 이전할 때는 적용 안 하는데 새로운 공장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해 달라 이런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당연히 저희들이 법을 만들 때도 그런 취지로 가져왔는데 법을,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당연히 저희들도, 그때 조세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인데, 어쨌든 방금 했던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실체적인 변화가 있는 내용이고 이건 아까처럼 포괄위임의 문제거나 명확화의 문제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보류시켜 놓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해석하고 집행 또 추가적인 보완 입법을 별도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하위 법령에 반영해서 새로운 공장도 이 이전에 포함된다는 개념을 좀 명확히 할 수 없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지금 예규로 할까 실무적으로는 생각 중인데 말씀하신 부분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규 반영?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일단은 당연히 예규와…… 국세청에서 집행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는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필요하면 또 저희들이 금년에 다시 법을 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임광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임광현 위원 예규 반영이라는 게 맹점이 있는 게 현장에서, 예를 들면 국세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조세소위에서 논의됐던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할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납세자가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예규 질의가 되고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법문에 어려우면 시행령이라도 좀 해서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일선의 혼란을 줄이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위원님 취지는 100% 동의하는데 지금 시행령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또 시행령에서 갑자기 명확화하는 내용을 넣으면 저희들이 법제처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아까 단순한 위임의 범위가 아니고 이건 좀 명확화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원칙적으로 이러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까 중소기업 핵심 근로자처럼 정말 도움이 되는 부분은 했더라도 또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 임광현 위원님의 취지를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신다고 그러면 이번에 같이 해도 저희는 좋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저는 이게 납세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입법 내용이 입법 기준이라든지 기술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새로운 공장의 의미, 해석 등과 관련해서 오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부가 예규를 통해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제실에서 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기재부의 입장에 따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 실무를 해 본 임광현 위원님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박성훈 위원님……

○임광현 위원 납세자한테 도움이 되니까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일단 조문을 직접 세세하게 만드는 담당 사무관 이야기는 시행령으로 하기에는 좀 안 맞다고 그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이게 새로운 공장이나 아니나 하는 게 굉장히 실제 현장에서 실무자가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 공장 중에서 세제 혜택을 안 받았던 공장인지 새로 건설하는 공장인지도 좀 애매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으로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다면, 세제실장님, 가능하다면 그냥 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하셔도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임광현 위원님이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할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다는데 기재부도 크게 반대는 없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게 누구 안이지요?

○박성훈 위원 기재부 사무관은 어렵다라고 방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아니, 시행령으로 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시행령으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어렵다, 그건 법률에 반영해 주는 게 훨씬 더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좋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명확하고 체계가 맞다.

○소위원장 박수영 법안 내신 정태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태호 위원 해 준다는데.....

(웃음소리)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이거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0번,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0번 항목입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 상향과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24년 세법 개정으로 3년이 연장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사 협의 결과는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5년 연장, 반도체는 7년 연장으로 연장 기간을 더 추가하는 그런 간사 협의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위낙 최근에 반도체 또 국가전략기술, 위원님들의 다양한 좋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연장하고 또 확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다양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3년, 5년, 7년 구분해서 결정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많은 고민 끝에, 국회와 정부가 다 같이 논의를 한 결과인데 어쨌든 3년으로 법률 개정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번에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아까처럼 결정됐더라도 이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안정성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저희들은 양쪽으로 다 해도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기재부 의견은 크게 문제는 없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소위원장 박수영 이런 뜻이고,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지금 신성장·원천기술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가 굉장히 큰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기간 중에 세제 지원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에 있어서 차질이 불가피하고 예측 가능성을 최대한 담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불확실성을 줄여 준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좀 나서 가지고 기간을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 국내 기업들이 경쟁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분야잖아요.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동 기간을 좀 늘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김태년 의원님이 10년으로 내신 것도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3년 단위로 자르다가 혹시라도 더 개정이 안 되면 손해를 크게 보게 된다 또는 투자 의지가 꺾인다 이렇게 해서 내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임광현 위원** 간사 간 협의를 존중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예.

차관님, 어떠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정해 주시는 대로, 간사 간 합의하신 안대로 가시는 데 저희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간사 협의안 5년, 7년으로 고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1번,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1번 사항입니다.

31번 사항은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정기회 때 정부안대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사 협의 결과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정부안 3년이 아닌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이 부분은 또 위낙 반도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현 상황을 감안해서 지난번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고요.

그러면 간사 합의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32번,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4페이지, 32번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대상에 경력단절자 범위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수정안에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간사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대공제 대상에 경력단절자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인데

요. 경력단절자 범위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포함하는 거고 그다음에 퇴직사유에 가족돌봄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자체를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개선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 아주 일부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무런 이견이 없던 부분만 지금 남아 있고 더 크고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또 시장의 걱정, 저희들 고민이 남아서 결국 합의 처리가 안 됐는데, 그러고 나서 아무런 이견이 없는 부분만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거라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아니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설계해서 그때 보고드리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양쪽으로 어떻게 해도 저희들은 큰 상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게 처리하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이것만 하면, 2개 간단한 것, 남성 포함하고 육아휴직 포함하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광현 위원님.

○**임광현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어차피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취지가 서민·중산층들을 위한 그런 취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경력단절자 범위에 당연히 남성 포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퇴직사유에 가족돌봄 추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또 다른 위원님들?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워낙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개선 할 게 많지만…… 지금 간단하다고 표현하셨지만 경력단절자에 남성 포함하고 가족돌봄 추가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이거라도 올해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제도와 관련해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아 가지고 꼭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성훈 위원** 들여다보면 제도 간의 정합성 문제도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기재부에서 대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조세소위를 연중 열 생각입니다. 법안이, 정부안이 올라오든지 의원안이 올라오면 연중 개최해서 여유 있게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막판에 정말 우리 고생했지만 3주 만에 막 다 하려니까 이게 너무 급해서 제대로 보지 못한 면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3번 설명드리겠습니다.

33번 항목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의 축소에 관한 부분입니다.

24년도 정부안이 통과돼서 하이브리드자동차 개소세 감면한도 70만 원으로 하향하는 부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사 협의 결과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를 25년도 12월 31일까지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간사 협의 결과 합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이 부분은 당시에 양당 간사님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논의한 결과 정부안대로 줄이기는 줄이되 다만 그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법률안의 최종 의결과 공포 과정에서 이미 여러 가지 시행이 돼 가지고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 달 반이 지났고 어쨌든 공포되는 데는 또 한 달 가량 걸릴 텐데, 아까 어떤 특정한 사례도 말씀드렸듯이 두 달 반 끊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조세 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좀 지양해야 될 체계 아닌가.

그리고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수요는 나름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적 안정성, 조세 체계의 안정성 차원에서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대로 집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기재부 의견대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하겠습니다.

34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4번, 국세기본법입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24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사망보험금 수령 시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한정승인 상속인 등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사 협의 결과는 보험금을 수령한 상속포기자의 피상속인 납세의무 승계 규정을 보다 명확화하는 부분입니다. 즉 보험금을 수령한 상속포기자는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으로 간주하도록 추가 규정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 정부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이 부분은 당시에도 논의하시면서 일부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셔서 그 내용 자체는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확화하는 것을 동의, 같이 합의가 돼서 내용이 반영된 건데 지금 이 케이스도 그렇고 조금 이따 국세기본법 하나 더 나오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법령이 한 달 전에 고쳐졌는데 거기에서 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보완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했으면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정부 생각이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또 시행령이나 추가적인 입법 보완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입장 어떠십니까?

다들……

그러면 기재부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5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5번, 15페이지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4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제2차 납세의무 부담 대상에 영농·영어 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사 협의 결과는 손익분배 비율이 출자액 비율과 다른 경우로서 손익분배 비율의 합계가 과반인 과점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 계산 방법을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이 부분도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같은 측면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석이나 하위법령 보완을 통해서 조세소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도 되겠지요?

하여간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집행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36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6번, 관세법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세청 제출 과세자료에 체납자 가상재산 거래내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가상자산 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중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사 협의 결과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조건인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자'를 삭제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로 소득세법,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실질적인 내용은 큰 차이는 없긴 한데 그래도 나름의, 조금은 실체적인 내용의 변경이 있고요. 어쨌든 소득세법, 법인세법하고 정합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고친 걸 또 한 번 고치는 것이긴 한데 이건 고치는 게 좋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실체적인 내용의 변경이 있다고 방금 실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간단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신고가 수리된 자’ 이렇게만 돼 있다 보니까 신고 수리되고 나서 그다음에 폐업을 했거나 영업중지를 하고 있거나 또 신고 수리되지 않고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특금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특금법을 인용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와 운영에 있어서 더 근거법이 되는 가상자산 보호법이 생겼으니까 그 법하고 맞추는 게 전체적인, 행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세법 간에도 그렇고 다 일관성과 체계가 맞는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합성상 개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 의견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7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 근거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24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금융자동정보교환정보에 암호화자산 정보를 추가하고 암호화자산의 정의를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사 협의 결과는 암호화자산의 정의 중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이 부분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간사 간 또 조세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인데 어쨌든 실체적인 내용 변경 없이 기존에했던 관련 규정 조문을 또 일부 명확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래 개정된 내용을 유지하고 필요하면 다음에 보완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암호화자산의 개념이, 정의가 시행령에 지금 돼 있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시행령으로 위임해 놨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임해 놨는데 그것을 법에 올리자는 건데 이왕 개정했으니 이번에는 그냥 가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시행령을 법률로 올리는 게 좋습니다마는 개정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안 받아들였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6페이지입니다.

38번부터 44번까지는 정부안이 본회의 수정안에서 삭제된 경우나 아니면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38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사 협의 결과는 원래 정부안과 같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0.5%, 2026년 말까지 0.65%, 그 밖의 사업자는 1.0%, 26년 말까지 1.3%로 하되 매출 대비 소득이 적은 업종인 소매업 및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0.8%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2026년까지는 1.0%를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행 공제율은 1.0%고 26년 말까지 1.3%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 정부 의견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영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이니까 김영환 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정부는 당초에 법안을 발의할 때부터 설명을 드렸지만 신용카드 사용이란 게 굉장히 보편화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부가세를 공제해 주는 것은 이제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의 문제가 매출액 10억까지는 1%를 해 주다가 그다음에 11억이 되면 바로 0%로 내려갑니다. 이런 부분들도 단계적으로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자체를 지금의 어려운 소상공인을 생각해서 다음에 하자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아니면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중에 소매업하고 음식점업은 전체 부가가치율이나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다르다, 그래서 좀 더 B2C 거래가 많은 소매업하고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다른 대우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은 계속 필요는 하되 소매업·음식점업 부분은 반영을 해서 대안을 만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 협의 결과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내용이고요. 저희들은 가능하다면 시행시기를 조금 조정해서라도 시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이것 발의하셨는데 의견 좀 주시지요.

○**김영환 위원** 저는 정부 사이드에서 자꾸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가가치 면제되는 비율을 축소시키고 축소된 내수, 소비 이 영역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과 반대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가서 제가 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간사 간 협의해 주시면 간사 간 협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간사님.

○**정태호 위원** 이것은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수정안을 내 가지고 부결시켰던 사안입니다. 부결시켜 주세요.

○**소위원장 박수영**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안인데 김영환 의원안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의견이 본회의 부결된 걸 다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이니까 이 건은 그냥 다음번에……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간사 간 지금 시행일 결정하시겠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그냥……

○**김영환 위원** 부결했고,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들이……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안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김영환 위원** 그렇지요. 현행법이 살아 있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래요, 현행법이 살아 있지요.

그래서 정태호 위원님 어떻게……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부결시켰는데 뭘 새롭게 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이건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현행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요, 현행 유지.

○김영환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38번은 없는 걸로 하고 39번.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9번 설명드리겠습니다.

39번은 ISA 납입·비과세 한도 및 가입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본회의 수정안에서 제외가 된 부분입니다.

간사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투자형 ISA의 납입한도를 2배 확대하고 비과세한도를 2.5배 확대하는 안으로 간사 협의되었고요.

두 번째는 ISA 소득요건 사후검증 폐지, 세 번째는 청년도약계좌 등 일시에 납입할 경우 연간 납입한도에도 불구하고 총납입한도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간사 간 합의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방금 정태호 간사님이 말씀하신 같은 케이스입니다. 사실 38번부터 44번까지, 맨 앞에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전체 법안을 부결시킨 상속세법 관련이거나 아니면 개별 부가세법, 조특법에서 해당 조문을 제외한 수정안을 통과시킨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래서 사실 정태호 간사님 말씀의 기준에 따르면 더 이상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또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세법하고 달리 전체적인 자본시장 육성 또 자산 형성 이런 부분이니까…… 또 다른 것하고 연계돼서 사실이 부분이 같이,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섞여서 수정되고 제외된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까 것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니까 저희들은 당초 정부가 제안한 대로 ISA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좀 더 많이 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일단 위원님들 의견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가 지금 약화되고 있는 건가요? 왜 정부 안 설명할 때랑 지난번 조세소위 때 말씀하신 내용이랑…… 지금은 뭔가 저희가 결정해

주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세제실이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방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성훈 위원** 좀 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결국 38번에서 44번까지는 저희들 소위에서 각 법안들에 대해서 심층토론을 했고 그 뒤에 또 간사님들 협의까지 이르렀는데 최종 본회의 통과는 안 됐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는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걸 추가 논의하는 의미는 사실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님께서 일괄 설명을 좀 하시고 정태호 간사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 힘든지 그걸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 그동안 소위에서 저희들이 고생했는데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긴 좀 그렇고, 7건밖에 안 되니까 죽죽 설명을 하면서 아까와 같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지만 정말로 이게 필요한 것이다 하는 컨센서스가 양당 간에 형성이 되면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쪽이라도 컨센서스가 안 되면 본회의 부결된 것까지 추진하는 데는 정치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7개밖에 안 되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9번은 일단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 하자는 안건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설명을 죽죽 다 듣고 논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수석님께서는 40번부터 끝까지 다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40번입니다.

40번 항목은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 가입을 허용하고자 하는데,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일반 가입자 대비 2분의 1의 납입한도를 적용하자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 41번 항목입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간사 협의 결과 둘 이상의 내국인의 공동출자, 외국자회사 소재지국 법령 등에 따른 자원보유국 지분을 제외하더라도 투자기업이 해외자회사 지분의 50%를 초과 보유하는 경우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42번 사항입니다. 42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에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받는 것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43번입니다.

43번 내용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의 간사 협의 결과는 기타 친족 범위를 현행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44번,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등 자료제출 의무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투자조합의 익명성을 악용한 최대주주 등의 지배권 확대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법적 중여 문제 해소를 위해 투자조합이 증권 등 권리를 취득·보유·거래하는 경우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내역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안들이 들어 있는 것 보니까 정부는 다 찬성 의견을 처음에 냈을 것 같고. 40번도 정부안이군요, 정부안이고. 대부분 다 정부안이기 때문에 세제실장님 얘기를 들어 봐야 정부안대로일 것 같고요.

이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는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정태호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이기 때문에 부담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건 정말 필요한 것이다 하면 위원님들 컨센서스가 되면 우리가 개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해야 되는 안건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9번은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게 있고……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40번도 39번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좀 더 자본시장 관련된 그런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라 이것도 뭐 안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제가 당시에 반대토론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40번 같은 경우는 중산층의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지만 40번 조특법, 소득세와 관련되는 국내투자형 ISA 신설은 여기서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또 다른 위원님들.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저는 개별적으로 보면 41번도 그렇고 42·43·44의 상속세 및 중여세법은 사실은 저희들이 세율을 건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규정하는 보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법안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이 정도는 크게 이견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임광현 위원님이나 김영환 위원님은 특별한 의견 없으시고요?

○**임광현 위원** 저는 38번부터 41번까지는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상증세법 관련해서 42·43·44번은 사실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상증세법이 다른 이슈가 번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괄로 처리가 안 된 그런 면이 있어서 42·43·44는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영환 위원 39번, 40번은 금투세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세금 때문에 투자 여력이나 혹은 감면 비율을 상향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다 부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접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임광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상증세법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기형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특히 42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오기형 의원님이 법안으로 제안하신 것 같은데 한번 토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 박성훈 위원 제가 우리 민주당 조세소위 위원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민주당 위원님들이 오히려 통과를 시켜 달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내용들 아닌가요? 42번 같은 경우는 편법 중여 방지에 목적이 있고 43번은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고 또 44번 같은 경우는 투자조합을 통한 조세 탈루 방지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보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것은 통과시켜야겠다고 강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우리 간사님들께서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이 부분은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만장일치가 돼야 통과될 것 같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 정태호 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수정해서 부결시켰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안이 통과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42·43·44번은 상속·증여세법에 통으로 부결이 됐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안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42·43·44 부분은 우리가 다 동의하시면 통과를 시켜 줘도 저는 찬성입니다.

○ 소위원장 박수영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중에 다른 반대 의견은 현재 없으신 건가요?

정부 측도 42·43·44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으신 것이지요?

○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예, 정부안으로 냈으니까……

○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안 내고 오기형 의원님 안 내고.

그러면 42·43·44는 모든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의 39·40은 내용은 자본시장 육성이라 굉장히 좋은데 부결을, 구체적으로 뺀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런……

○ 최은석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진짜 이 법안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회의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지 다시 한번 논의해 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건 실은 자본시장 관련된 문제고, 이게 물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 좀 혜택을 주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아주 건전한 육성이 목적이라 진짜 개별적으로 꼭 반대하시는 것 아니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소위원장 박수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최은석 위원 정태호 간사님께서 다시 한번……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 의견도 듣고 간사님이 정리하셔야 될 테니까……

김영환 위원님은……

○김영환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태호 위원 다 반대.

○소위원장 박수영 다 반대?

○김영환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영 좀 아까운데요. 우리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상당히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좋을 것 같은데……

○김영환 위원 현재 주식으로 운용 안 돼요, 다 예금 계좌에 넣고 있지.

○소위원장 박수영 ISA를 누가 예금에 넣나요? 다 가서 주식형으로 바꾸는데 일임형이냐 선택형이냐 그것만 본인이 고르면 되는 것입니다마는. 야당 위원님들 세 분이 전부 반대하시니까 이것은 매우 아깝습니다마는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다음번 개정 때 한 번 더 컨센서스를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정부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정태호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에서 부결돼서 이번 계기에는 말씀하신 ISA 부분이 통과가 어렵다는 부분 정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총리께서 최근에 밸류업 관련된 세제의 조속한 통과 말씀하셨고 야당 위원님들의 반대는 좀 있으셨지만 배당이랄지 법인세랄지 하는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희망하고 있고 야당 여당 모두 자본시장법, 상법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3월이라도 좀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어쨌든 여당 위원들은 전원 찬성하시고 야당 위원님들은 전원 반대하시는 이런 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안타깝지만 합의가 안 되는 안을 통과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44번까지 논의가 끝났는데……

뭐 있습니까?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투자형 ISA에 대한 홍보를 그동안 좀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이걸 믿고 ISA에 투자를 하겠다 또는 기존에 있던 상품을 이쪽으로 전환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금융소비자들의 신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먼저 금투협회나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아까 박성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밸류업의, 이름이 밸류업

이 될지 자본시장 육성이 될지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 공히 다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설득 노력을 하고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저도 잠깐만……

○소위원장 박수영 예.

○김영환 위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게 마치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메인이 된 것처럼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전체, 자본시장 발전·육성을 위해서 기재부가 이전에 해 왔던 것, 그런데 또 그것에 배치되게 전혀 다른 생각으로 제출됐던 것, 이것을 한꺼번에 기재부 자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오세요. 어떤 때는 금투세 도입하자고 했다가 어떤 때는, 추경호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상법 개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때는 상법 개정하겠다고 그랬더니 또 다른 입장 가지고 오시고요. 그러니까 ISA 또 금투세하고 연결된 이것을 가지고 마치 무슨 벨류업처럼 설명하시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현재 실제 운용되는 구조가 지금 예금에 다 넣고 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시장을 진짜 육성하기 위한…… 본질을 흐리는 말씀들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ISA 관련된 부분은 여야 간에 이견이 현재는 크지만 우리 현안질의 과정을 통하고 또 앞으로의 시간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면 정부 측에서 조금 더 데이터도 만들고 해서 추진을 할 때 하더라도 오늘은 통과시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및 개인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반드시 국내투자형 ISA 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같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이 양당 간에 완전히 나눠져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저희가 대안과 어떤 방향이 좋을지 다시 현안질의를 통해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태호 간사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하나 잠깐, 죄송한데 마이너한 건데.

저희 실무진에서 34·35는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위원장 박수영 아까 34·35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소위원장 박수영 잠깐만요, 그 전에 ISA 관련해서 정태호 간사님 말씀하려고 하신 것 아닌가요?

○정태호 위원 예, 관련해서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것 하고 그다음에 합시다, 다른 안건 넘어가기 전에.

○정태호 위원 꼭 ISA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벤류업과 관련된 건데 어차피 금투세가

시행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래세는 또 제로까지 가 있지요, 코스피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코스피.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ISA 부분은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제도 전체를 놓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것 없이 자꾸 한 부분 부분씩 갖고 오면, 이 제도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정합성이 있는지도 따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오늘 이 ISA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인 자본시장 육성 정책을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는 조건에서 어떻게 갈 거냐 그것을 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앞으로 업무 추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 할 얘기가 있다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아까 34·35번 관련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간사 협의했던 내용을 그냥 빼고 기존 정부 원안이거나 현행 규정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한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괄 위임 등과 관련한 단순한 자구 수정, 그다음에 조금 의미는 있지만 내용의 변경은 없는 명확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 두 가지를 다 가급적이면 개정…… 어떤 수요나 크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현행 유지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이전에 관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명확화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또 이 부분이 전문위원실도 이야기하셨고 또 일부 위원님도 제기하신 사항이어 가지고 만약 그렇게 단순한 조문 정리가 아닌 명확화를 통해서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과 납세 편의가 증진된다 그러면 이 34번, 35번도 같이 개정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는 점을, 제가 입장을 변복해서 죄송하고요. 그렇게 한번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수석전문위원님은 34·35에 대해서 어떤 검토의견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34번은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제기한 사항입니다. 판례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상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한 상속포기자는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으로 간주한다고 법문에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그 판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혼선이 없기 때문에 34번은 그렇게 간사 협의 결과대로 규정하는 것이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35번도 계산 방법이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 방법을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는, 이게 실체적인 내용은 계산 방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이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간사 협의 결과대로 이렇게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좀 더 판례를 반영하자고 제기한 안건이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소위원장 박수영**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안 그래도 제가, 특히 34번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만 타고 조세 회피하는 그런 사례, 아주 좋은 사례를 지적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그런 입장을 하셔서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음에 법 가져올 때 이걸 우선적으로 가져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입장을 번복 했으니까 소위에서 받아서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율을 건드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명확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 측 의견이고 이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검토의견에서.

그러면 이종욱 위원님 외에 다른 위원님들……

○**최은석 위원** 35번은 이렇게 간사 협의 결과로 하게 되면 한도액이 좀 더 개선되는 겁니까? 계산하는 내용이?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합리화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조세 전문가인 임광현 위원님, 이것 어떻게 할까요?

○**임광현 위원**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의견 있으시고요?

○**임광현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영** 정태호 간사님.

○**정태호 위원** 아까 35번은 부결시키기로 한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수영** 34·35 둘 다 안 하기로 했던 게 정부 측 의견이었는데 정부 측에서 이거는 세율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명확화하는 것이라 하자 이런 것이라고요. 처음에 의견 제기한 것은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제기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지난번에 통과된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아닙니다. 통과된 것에서 간사 협의 결과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최은석 위원** 저희들이 추가로 논의한 게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정부안 통과됐으니까 그냥 놔두자고, 손대지 말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아까 공장 지방이전도 같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친 걸 또 고치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오히려 공장 지방이전보다 이게 더,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걸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고, 그래서 공장 지방이전을 고칠 것 같으면 이것도 포함해 가지고 이 3개를 같이 고쳤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 국세기본법인가요, 3개가 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정정훈** 공장은 조특이고 이것 2개는 국세기본법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저도 대법원에서 일관된 판결을 지금 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실제 납세자들이 볼 때 혼란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걸 명확히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아마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걸 바로잡아 주고 법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우리 간사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갑자기 또 들고 나오니까 다시 보게 되잖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그냥 두 분이서 한번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가……

○소위원장 박수영 예, 그러시지요.

어차피 안건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해서 우리 행정실에서도 안건 정리를, 조문 정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 3시 35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직전에 논의되었던 34번과 35번에 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 논의 결과 간사 협의안을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의는 다 끝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자료 22번까지 의결했지만 이후 논의로 추가된 안건 포함해서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위자료 28번 내용은 오늘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합의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포함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자료 28번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위한 납부기간 완화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17항, 제19항 등 총 56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에 부대의견을 붙여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제102항, 제103항 총 3건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9항 및 제100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논의된 내용 소위자료 34번과 35번을 포함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김영환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 포함해서 오늘 안건 관련한 부대의견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합의하고 또 제의하신 김영환 위원님 의견까지 반영해서 법안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붙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반영 폐기를 의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난해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정안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서 입법 취지가 달성된 법안은 폐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항 등 총 3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정안에 이미 그 내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체계·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회에게 위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김범석 차관을 비롯한 정부 공무원들, 최병권 수석을 비롯한 국회 직원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영환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신영대 안도걸 오기형 이종욱 임광현 정태호
천하람 최은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범석

세제실장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 박금철
소득법인세정책관 조만희